

—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【별표】의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30만원 인상
 - 전문의 : 월 609,000원 이하 → 909,000원 이하
 - 일반의 : 월 518,000원 이하 → 818,000원 이하
- 적용시기 : 2003. 7. 1 부터

4. 참고사항

-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4조, 별표9의 2호
- 의료업무수당안 통보(경상북도 총무12151-11236)

5. 검토의견

- 2003. 6. 14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시행토록 승인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